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36호

2021.12.6.(월)



목 차

◆ 고 시

제2021-674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2
제2021-675호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11
제2021-678호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17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4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방역조치 안내 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며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여 의료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유행 규모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서울시내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기 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2. 고시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교회, 사찰,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
3. 고시내용
 - 정규 종교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해제
 - ※ (예방접종 미완료자 포함시) 전체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해제
 - 종교시설 기본 방역수칙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소모임(최대 6명까지 가능)·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종교시설 방역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밀집도 완화 등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 없음(취식, 큰소리 등 금지) ◦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으로부터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499명까지)*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수용 제한 인원 준수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소모임·성가대는 접종완료자만 인정	
	⑥ 음식섭취 등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및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섭취 등 제외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 소모임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환기) 종교활동 전후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정규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운영 시) - (식사제공)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 공간 칸막이 설치(또는 지그재그 앉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기) ·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 공용식기(접기 등) 사용 시 일회용 장갑 사용 · 식사 시 대화 자제 - (비말발생행위) 노래, 춤, 레크레이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자제하여 운영 (공용시설) 샤워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 성가대·소모임 운영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성가대 등 해당활동 참여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성가대·소모임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 정규 종교활동, 종교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 구성	접종완료 및 PCR 음성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접종예외자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포함		

4. 법적근거(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49조1항제2호의2,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등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및 제4항, 제79조제3호의3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또는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6일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담당자 : 문화정책과 김은경 실무사무관(02-2133-2522)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02-2133-2532)

붙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인원 제한 없이 정규 종교활동 가능
 -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 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운영
-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 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100명 미만으로(9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500명 미만으로(499명까지) 운영 가능*
 - * (4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 종교행사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적용, 구체적인 방역수칙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①예방접종자인(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설교자가 ②설교(강론,

법문, 설교 등)시에 한해 ③가림막(아크릴판) 설치 및 ④설교자와 신도간 3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한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4가지 요건 모두 충족),

- ▶ 예방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설교자를 제외한 사회자(진행자), 인도자, 참석 신도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설교자도 설교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가림막은 설교자 신장이상 높이로 정면과 양옆 3면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5호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1.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적용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일반음식점 등도 적용)
 - 서울시 소재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3. 적용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¹⁾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1)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제1항)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름
 ※ 집합·모임·행사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안내」 공고에 따름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6일(월) 0시부터
7.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 끝.

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원치자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이용) 가능/18세 이하 이용 금지 ◦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수기명부 운영 금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운영시간 제한 준수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⑦ 추가적용 수칙(콜라텍·무도장 한정)	
	◦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 시설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추가적용 수칙	
	◦ 시설 내 모든 공간 출입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시설 내 모든 공간 출입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8호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및 제2의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대형유통시설,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13호('21.11.1.), 제2021-663호('21.12.1.)는 본 고시로 대체함

1. 적용기간

- ①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② 2021년 12월 6일(월)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사적모임제한 : 수도권 6명
- ③ 2022년 2월 1일(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 축소(중전:18세 이하인 자 ⇨ 변경:0~11세 이하인자)

2. 적용단계 : 특별방역 대책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3. 적용대상

I.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무)

- 서울시 소재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DVD방, 직업훈련기관

*①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예: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 계도기간 부여(12.6.~12.12.)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노래(코인) 연습장)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계도기간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II.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서울시 소재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예 : 대형마트, 특정 품목(의류·가전·가전용품·서적 등)에 특화된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공구·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농협 하나로마트)

III. 고위험사업장

○ 서울시 소재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대리점)

4. 적용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5. 기타사항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참석자의 사적모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로서만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시 (※대형유통시설 등 시설 내 식당·카페 이용시 동일 적용)	
수도권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X)
〈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노래(코인) 연습장

- ※①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 예: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위험요인>

- ▲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료 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경우 거리두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 오랜 시간 일행 간 함께 체류하는 경우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마이크, 노래코드북, 리모콘, 탬버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방 내부는 창문이 없는 등 좁고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이용) 제외 가능, 수기명부 운영 금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물·무알콜음료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준수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 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손씻기)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PC방(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키보드, 마우스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휴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영화관

<위험요인>

- ▲ 연극, 뮤지컬, 오페라 공연 등 노래와 말을 하는 공연은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클래식 공연 제외)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공연 관람 전·후 함께 식사 등 모임으로 이어지는 사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시설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예매자(단체예매시 예매자 1명)에 한해 명부작성 예외 및 안내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원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단, 접종원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별도 상영관 또는 구역(회차)을 달리하여 시설 운영하는 경우 취식 가능
	☞ 2021.12.1. 0시부터 접종원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⑦ 추가적용 수칙	
권고 사항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 좌석 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하지 않기 ◦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 방역수칙 미준수 시 퇴장 조치에 협조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멀티방·DVD방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닦기,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직업훈련기관

<위험요인>

- ▲ 강의, 대화(어학학원 등)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기숙 학원 등) 음식섭취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관악기 학원) 악기 연주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노래, 연기, 무용, 댄스학원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악기, 연기, 무용, 댄스 학원 등은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동반될 가능성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학원생의 주기적 방문은 잦은 재노출 기회로 이어짐
- ▲ 시설에 따라 지하에 위치, 창문이 적은 시설 등 환기가 어려운 시설 가능
-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원에서 노출을 통해 여러 학교로 전파 가능
- ▲ 규모가 큰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고시학원 등)의 경우 지역·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계도기간(2021.12.6.~12.12.) 이후 수기명부 운영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권고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⑥ 기숙시설 운영	
	▲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직업훈련기관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동)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훈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10일간 예방격리 권고(접종완료자, 2일 이내 PCR음성확인자 예외),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동)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접종완료자 예외)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덮개 사용,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착석) 한방향으로 좌석 배치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오락실

<위험요인>

- ▲ 음식 섭취,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 시 함께 대화, 식사 등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게임기 등의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응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④ 밀집도 완화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밀집도 제한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⑤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권고 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휴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기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위험요인〉

- ▲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 적용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예: 하나로마트)대상, 준대규모점포는 권고·전통시장 제외)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원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③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④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⑤ 추가적용 수칙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권고사항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밀집도 완화)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 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 (집객행사) 대규모 세일 등 집객행사 자제 ◦ (공용시설) 휴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권고사항 준수

□ 콜센터

<위험요인>

- ▲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무 환경일 경우 증상 발견이 늦어짐, 연쇄감염 발생
- ▲ 전화 응대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 근로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근로자들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 시설 내 공용 공간(휴게실 등), 공용 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사용을 통한 직원 간 접촉 가능
- ▲ 직원 간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밀접 접촉 가능
- ▲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미흡
- ▲ 외부 방문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의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방역수칙 준수(의무)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증상확인 협조, 증상 있을 경우 출입하지 않기
	③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모든 방문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전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의무)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의무) ■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의 마스크 여분 충분히 확보 및 비치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의무)
	⑤ 음식섭취 자제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을 자제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식사공간 이외에서 음식물 자제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⑥ 손씻기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의무)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의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운영대장 작성) * 가급적 조별 인원 균등분할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안내	■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 점심시간 시차제 참여 - 조별 식사시간 준수 * 외부식당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상시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고 자연환기 병행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 회의, 작업 중 지정된 시간에 환기 후 근무

구분	방역관리자·운영자 수칙	종사자(근로자)·방문자 수칙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책자,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사무용기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개인별 사무공간(책상 등) 및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개인물품 소독 철저 ■ 공용물품(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소독 후 사용하기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의무)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의무)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의무)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증상확인 협조 ■ 증상 있을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퇴근 또는 출근자제
추가 수칙	① 근무형태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 활용
	■ 업무특성 상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 충분한 휴게시간 이용
	②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출장, 행사	
	■ 출장 최소화,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실시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개최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안내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 출장 최소화 하기,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행사 등 가급적 온라인(영상)으로 참여 ■ 대면으로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 등 참여 시 개인위생수칙(마스크 착용, 손 위생, 거리유지 등) 준수 ■ 사업장 내 모임, 회식 자제
	③ 구내식당, 통근버스, 기숙사, 시설내 공용공간	
	■ 해당 방역수칙 준수 안내	■ 해당 방역수칙 준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5.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6. 위반시 조치사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지침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지침 위반(10만원)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 폐쇄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이 가능함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6일(월) 0시 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대형유통시설 02-2133-525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직업훈련기관 02-2133-5463)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02-2133-5384)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콜센터 02-2133-5248)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노래연습장 02-2133-9221,
 PC방·오락실 02-2133-9213, 영화관·멀티방·DVD방 02-2133-9217)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